##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49

발의연월일: 2025. 6. 2.

발 의 자:신장식·장종태·차규근

서왕진 • 김선민 • 강경숙

황운하 • 이해민 • 김재원

이용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허용되고 보장받아야 할 것임.

그런데 실제 선거 실무에서는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속 및 처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공무원 등이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條(公務員의 中立義務 등) ①	第9條(公務員의 中立義務 등) ①
公務員 기타 政治的 中立을 지	
켜야 하는 者(機關·團體를 포	
함한다)는 選擧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u>&lt;후단 신설&gt;</u>	<u>이 경우 제58조</u>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
	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
	<u>니한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